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80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6.

지식경제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우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고, 서신독점 요금기준 통상우편요금을 정의하며, 서신송달업자 신고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한편, 그 밖에 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신 제외 대상 신설(안 제1조의2)

○ 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 신용카드 등으로 정함

나. 우편독점 요금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안 제1조의3)

○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보통우편요금으로 정함

다.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110-1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

(전화 02-2195-1262, 팩스 02-2195-1219, 이메일 mysun830@mke.go.kr)